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의미와 구성

최 영 명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부장



원 자력은 발견된 이래 인류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반면, 전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은 이를 이용하는 인류의 지혜에 따라 상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즉 핵비확산 노력이 45년 세계가 핵무기의 위력을 바라본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핵비확산 노력은 소위 '국제 핵비확산 체제(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체제, 양국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간 체제 및 각국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5개 국가만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차별적인 체제이기는 하나,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75년 NPT를 비준하고, 동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 핵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마침내 95년 10월 국제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의 핵심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와 원자력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 NSG)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주도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핵무기 확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국제 교역도 일정한 수출 조건이 만족되어야 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에게는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이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

여 인류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때 진정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비확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핵비확산 체제의 의미

원자력은 20세기에 인류가 발견한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 소량의 핵물질로부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1g의 우라늄-235가 완전 핵분열하였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또는 석탄 3톤이 연소되어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이와 같은 위력을 가진 원자력은 불행히도 군사적 목적으로 먼저 사용되었다.

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미국·독일·일본 등 각 전쟁 당사국은 원자력이 무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미국은 42년 맨해튼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에 착수하여 45년 원자 폭탄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원자력은 비록 군사적 목적으로 쳐

음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원자력 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원자력 동력 등과 같이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해수 담수화 등과 같이 새로운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96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44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력 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은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용도로 공히 이용될 수 있다.

양쪽에 쓰이는 기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공유될 수 있다는 데 원자력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즉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라 할 지라도 원자력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과학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원자력의 경우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원자력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체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핵비확산 (nuclear nonproliferation)'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핵비확산'이란 '핵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또는 '핵무기 확산 방지

(prevention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의 줄인 말로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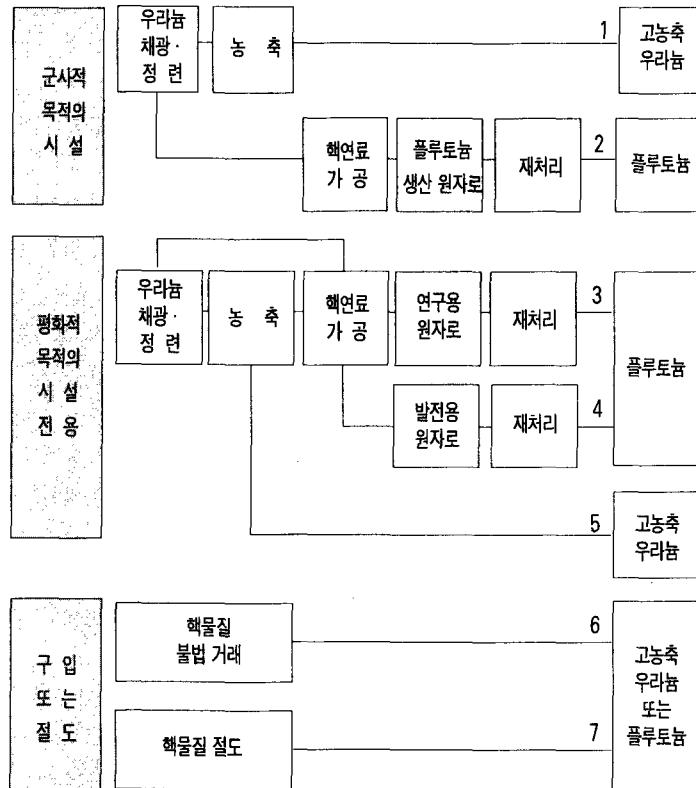
여기서 '핵비확산 체제'란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핵무기의 전전성 확보를 위한 핵실험을 금지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제적인 조약·제도·협정 등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가 처음 나타난 이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원자력 기술이 진보되면서 핵비확산 체제도 병행하여 발전되어 왔다.

앞에 설명한 '확산 방지'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의 핵비확산 체제에서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다.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에서는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미국·영국·옛 소련·프랑스 및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도 핵무기가 남아 있었으나, 러시아만이 공



(그림) 핵무기급 핵물질의 가능한 확보 방법

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세 나라에 있던 핵무기는 모두 러시아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핵비확산은 핵무기의 수를 줄여 나가는 군축(arms reduction)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또한 핵비확산은 '방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서 핵무기 확산 방지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비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91년 걸프전 이후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개념이 미국의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반확산' 개념은 확산이 일어났거나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군사적 제재 조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핵비확산의 대상

핵비확산 체제는 핵무기가 그 대상이다.

핵무기의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과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확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핵무기 보유국 수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며, 수직적 확산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성능이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경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평적 확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인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그림>과 같이 7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7가지 경로를 차단한다면 효과적으로 수평적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 보유 5개국은 핵무기용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림>의 1과 2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를 위한 전용의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였다.

기존의 핵비확산 체제는 이러한 경로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는 이라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바에서도 알 수 있다.

IAEA는 이러한 비밀 원자력 활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93+2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조치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다음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에서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법인 <그림>의 3, 4, 5의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중수로(PHWR)와 흑연 감속로 등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지만, 경수로(PWR)는 2~4%의 농축 우라늄을 필요로 한다.

단지 평화적 목적의 경우에는 2~4%만 농축하지만, 이를 90% 이상 농축하게 되면 핵무기급 물질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

이 플루토늄은 고속 증식로나 경수로의 핵연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많이 생성된 시점에서 핵연료를 인출하여 재처리하면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의 핵무기 확보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IAEA의 안전 조치와 원자력공급국그룹의 수출 통제 체제이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로서 <그림>의 6과 7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핵물질의 확보 수단으로 암시장(black market)에서의 구입·절도 또는 탈취 등을 통하여 핵물질을 획득하는 것이다.

득하는 것이다.

이 확산 경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제도가 있다.

2. 수직적 확산

수직적 확산은 핵무기 보유국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과 핵보유 의혹국들의 핵무기 수는 수천 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개발된 핵무기의 개량 및 전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실험 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최초의 핵실험 이래 2,000여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핵보유국들의 행동은 수직적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수평적 핵비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한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수직적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 CTBT)이 96년 9월 유엔(UN)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론적으로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고, 기존의 핵무기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은 모의 실험(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기 없는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핵무기 관련 정보는 각 국가의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전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 냉전의 종식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 START)을 체결하여 핵무기의 수를 줄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다.

핵비확산 체제의 구성

핵비확산 체제는 참여 국가의 범위에 따라 다자간 체제와 양자간 체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다자간 체제

다자간(multilateral) 체제는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제로서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 사항, 즉 핵무기의 제조·실험·반입·배치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 통제나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조치와 같은 다자간 체제들은 해당 체제의 이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가 그 기

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가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고, 또한 참가국들이 조약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다자간 체제로서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약이나 제도에는 핵비확산조약(NP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약칭 「핵물질방호협약」), 원자력수출통제체제(NSG, 쟁거위원회, Wassenaar Arrangement) 등이 있으며, 일정 지역 내의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체제로는 중남미 핵무기금지조약(Tlatelolco),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Rarotonga),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Pelindaba) 그리고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Bangkok)이 있다.

가. 핵비확산조약(NPT)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은 당사국들의 원자력 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고, 핵무기의 제조나 개발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에

(표) 세계의 핵무기 현황

국가	핵 실험	핵분열성 물질 생산	핵탄두 카운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 30 : CTBT 발효시까지 핵실험 잠정 중단 발표 • 최종 실험 : 92. 9. 23 • 총실험 횟수 :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년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중지 • 88년 핵무기용 풀루토늄 생산 중지 	9,225
러시아 /C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소련을 법적으로 이어받은 아래 핵실험의 중지가 관측됨 • 최종 실험 : 90. 10. 24 • 총실험 횟수 :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동중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풀루토늄을 비군사용으로 사용할 것 공약 • 88년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중지 	11,000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vada에서 핵실험이 미국의 일시 정지에 의해 제한됨 • 최종 실험 : 91. 11. 26 • 총실험 횟수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년 대부분의 핵무기용 풀루토늄 생산 중지 • 50년대말과 60년대초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이후 미국의 재고량으로부터 획득 	20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실험 : 96. 1. 27 • 핵실험 중지 선언 : 96. 1. 30 • 총실험 횟수 : 210 	• 핵무기금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385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실험 : 64. 10. 16 • 최종 실험 : 96. 7. 29 • 핵실험 유예 발표 : 96. 7. 30 • 총실험 횟수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핵무기용 풀루토늄 생산 • 87년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중지 보고 	450
이스라엘	• 남대서양에서 핵폭발 장치를 79년 실험한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대 중반 이래 풀루토늄 생산 원자로(Dimona) 가동중 	50~100
인도	• 74년 핵실험	• 65년 이래 핵무기용 풀루토늄 생산	?
파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 이후 핵무기용 우라늄 생산 • 91년 일시적 생산 중지 	?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적 조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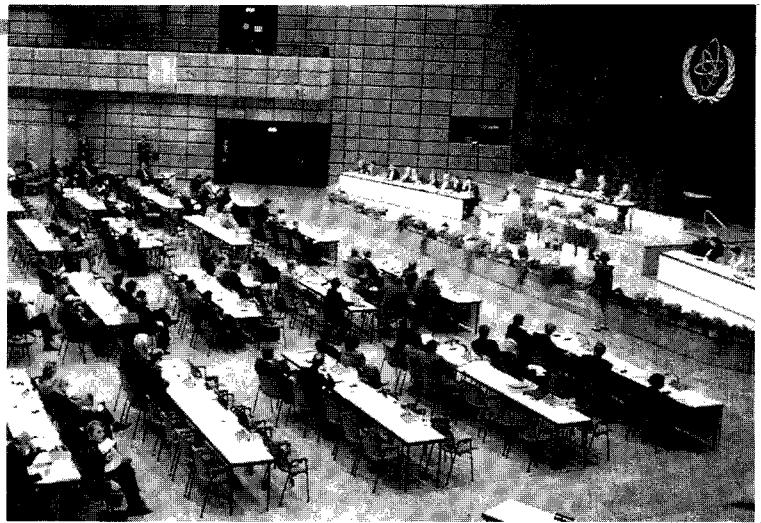
NPT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를 핵비보유 당사국의 모든 원자력 활동에 적용하고, 원자력 수출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수입국의 원자력 시설에 안전 조치의 적용을 요구하는 원자력 수출 통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지하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의 핵실험을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명중에 있는 CTBT가 발효되면 IAEA의 안전 조치 체제와 같은 검증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검증 체제는 지진파, 방사능 핵종, 수중 음파 및 공중 음파를 탐지하여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증 체제의 일부가 98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

다. 핵물질방호협약

핵물질방호협약은 당사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해서 적절한 방호 조치를 강구하여 핵물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고, 분실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핵물질 방호에 대한 사항은 물리적 방호 협약, IAEA의 권고, 그리고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의 물리적 방호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라. 원자력수출통제체제

원자력 교역에 관한 국제적 통제 체제의 기반은 NPT의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초의 국제적인 원자력 수출 통제 그룹인 쟁거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평화적 이용 보증', '안전 조치 적용', '안전 조치 하의 재이전' 등의 조건을 붙여 수출해야 하는 통제 품목(trigger list)을 74년 발표하였다.

그후 원자력 선진국들은 인도가 핵 실험에 성공하자 원자력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공급국 그룹(NSG)을 구성하였다.

이 그룹의 설립 목적은 첫째 NPT 비당사국이었던 프랑스를 국제 원자력 수출 통제 체제에 참여시키고, 둘째 원자력 수출 통제에 있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목적의 NSG는 78년 민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우리 나라는 75년 핵비확산조약(NPT)을 비준하고, 그 해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다.

한 원자력 품목의 수출에 쟁거위원회의 수출 조건보다도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비핵지대조약(NWFZ)

NPT, CTBT 등이 전세계의 국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반면, 비핵지대조약(Nuclear Weapon Free Zone : NWFZ)은 어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비핵지대조약은 특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 그 역내에 식민지 또는 관할하고 있는 영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역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비핵 지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핵보유국들의 조약 준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비핵 지대의 부속서에는 주로 핵보유국들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 발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 지대의 회원국은 역내의 해당 국가와 핵보유국들로 구성된다.

2. 양자간 체제

양자간 체제는 특정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두 개의 국가 또는 기관 등일 경우 형성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두 당사국 중에서 핵물질이나 장비 등을 공급한 당사국이 통제권을 가진다.

양자간 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당사국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양국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해결한다.

양자간 체제는 다자간 체제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었으나, 다자간 핵비확산 체제가 출현함에 따라 안전 조치 등 일부분은 안전조치 이관협정에 의해 다자간 체제인 IAEA로 그 기능이 이전되었다.

양자간 핵비확산 체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원자력협력협정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의 공동선언이 있다.

원자력협력협정에서는 양국간의 핵물질 공급 및 기술 이전 조건, 핵물

질 등의 형상 및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 선언은 양국간의 원자력 이용 개발에 따른 핵비확산 의무와 핵무기 개발의 포기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원자력협력협정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 교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국제 기구간 체결하는 원자력협력협정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법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원자력협력협정에 포함되는 주요 핵비확산 관련 규정은 공급국의 국내 규정과 동등하며 그들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협정의 조항은 당사국의 핵비확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며, 이외에 원자력 교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협력협정은 다른 국제 조약이나 협약과는 달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개발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인 창구이면서, 또한 핵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령국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이다.

예를 들면, IAEA의 안전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국에 의하여 안전 조치가 실시되게 되어 있고, 이전된 핵물질의 재처리나 농축 또는

재이전시 공급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협력협정상의 공급국의 규제들은 74년 인도의 핵폭발 실험으로 더욱 심해져 공급국이 공급한 핵물질이나 장비·시설의 재이전이나 핵물질의 변형 등에 대하여 사전 동의권(prior consent right)을 보다 확대하였고 안전 조치 적용을 강화하였다.

나. 공동선언

양국간의 공동선언은 당사국의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 제조나 실험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공동 상호 사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양국간 공동선언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북한간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있다.

이 공동선언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이외에도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보유도 금지하고 있는 특징이다.

다. 상호 사찰 제도

양국간 상호 사찰 제도는 양국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 양국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 유효한 상호 사찰 제도로서 아르헨티나·브라질간에 설립한 ABACC이 있다.

맺는말

원자력은 평화적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한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핵비확산 체제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국제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국제 사회의 일원인 이상 어떠한 국가도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자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북한 등 일부 국가의 돌출적인 행위는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국가에게 큰 제약 요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게 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나 국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 개발도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면서 추진해야 하며,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자력의 이용 개발에 부과되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